

예산총칙

2016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83,290,304	20,498,709
일반회계	591,790,686	17,753,721
특별회계	91,499,618	2,744,989
공기업특별회계	74,745,665	2,242,370
상수도사업특별회계	48,032,904	1,440,987
하수도사업특별회계	26,712,761	801,383
기타특별회계	16,753,953	502,619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475,010	44,250
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	100,000	3,000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3,718,286	111,549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144,469	4,334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9,129,513	273,885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1,859,675	55,790
지하수특별회계	327,000	9,81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764,939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